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해 일한 만큼 보상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고,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,

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5항 본문 중 “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”를 “대신하여”로 한다.

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일에 4시간, 1개월에”를 “1개월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”을 “위하여 기관 또는 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, 시간외근무수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“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”을 “2회 이상 적발하거나 1회 적발 시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인 때에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영 시행 전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

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의 수당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
은 1일에 4시간, 1개월에 57시
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~ 3. (생략)

⑤ · ⑥ (생략)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, 1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

-- 1개월에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----- 위하여 기관 또는
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
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
수 있으며, 시간외근무수당 ---
-----.

(8) -----

-- 2회 이상 적발하거나 1회 적
발 시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

요구해야 한다.

⑨ (생략)

상인 때에는 -----.

⑨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3